

현안분석 2011-06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문 준 조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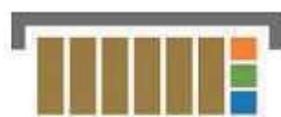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1-06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문 준 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Reasonable Adjustmen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Lost Properties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연구자 : 문준조(선임연구위원)
Moon, Joon-Jo

2011. 9.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현실 미반영

- 우리나라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다양한 유실물정보센터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기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일본은 이미 2007년 유실물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

- 일본은 관련법의 통하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통합유실물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과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II.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민법의 관련 규정과 유실물법에 대한 조문별 분석

- 특히 소유권 취득시한과 관련된 문제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제도도 분석함
- 일본의 개정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유실물법의 관련 조문들을 취득시한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실물법에서도 이러한 현대적 상황에 부합되도록 전면 개정을 내용을 소개함
- 기타 국가의 유실물법 내용
 -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지역의 유실물 관련 법규정과 운용상황을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실물법과 다른 특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함.
 -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건가액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유실물정보검색시스템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이라는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필요성 및 기타 개선사항 소개

Ⅲ. 기대효과

- 유실물법상의 유실물 처리절차와 소유권 취득시효 및 기타 개선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일본과 같이 유실물취득시효를 단축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

○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실물 처리에 있어서의
물건 가액 고려의 근거 제시

▶ 주제어 :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효, 민법, 유실물법, 인터넷, 분실물
센터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Acquisitive Prescription of The Lost Properties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 In the Internet Era,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reason of existence, some problems and comparable consideration about this system concerning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ossession right of real property off civil law and law on lost properties.
 - Civil Law and Law on Lost Properties of Korea have not reflecting the necessity for shortening the period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Japan amended the Civil Law and Law on Lost Properties to shorten the period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in 2006.
 - Necessity for the Careful Consideration of shortening the period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 Thanks to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Internet, Properties lost or forgiven in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roads are easily located and resumed if their owners if they wish to do.

II. Major Contents

- Amendment of Civil law and the Law on Lost Properties in 2006.
 - Japan amended relevant Provisions of the Civil law and the Law on Lost Properties in response to the Internet era, resulting in the shortening the period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 In, Korea, Germany, France, U.S and Canada, Their Relevant Laws Have Not Reflected the Current Internet Circumstances, yet.
 - Korea have many lost Properties Centers in which make their owners easily locate them if they do not need to visit there and can and resume them if they visit there. Korea's Relevant Law have not Reflected the Current Internet Circumstances, yet.
- Considering the Interest of Ownership and the Reality of the Easy Location and Resumption of Lost Properties via Internet, I think that the system of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improved, especially including reasonable shortening the period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II. Expected Effects

- Providing the Evidence of Desirable Improvements in Respect to Treatment Procedures, Acquisitive Prescription, etc. of Lost Properties.

Shortening the Period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ithin a reasonable extent(3 to 6 months).

►► Key Words : Lost Properties, Period of Acquisitive Prescription, Civil Law, Law on Lost Properties, Internet, Lost Properties Center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 2 장 유실물과 우리나라의 관련법 체계	17
제 1 절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규정	17
제 2 절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19
1. 의 의	19
2. 주요 내용과 분석	21
제 3 절 기타 법령상의 유실물관련 규정	32
제 3 장 주요 국가의 유실물 관련 법령	35
제 1 절 일 본	35
1. 2007년 유실물법의 전면 개정	35
2.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38
3. 습득자의 소유권 상실	42
제 2 절 독 일	43
1. 개 요	43
2. 주요 내용	43

제 3 절 프랑스	48
1. 개 요	48
2. 주요 내용	49
제 4 절 영 국	55
1. 개 요	55
2. 주요 내용	57
제 5 절 미 국	62
1. 개 요	62
2. 뉴욕주	62
3. 캘리포니아주	66
4.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69
제 6 절 캐나다(퀘벡주)	72
1. 관련 법규정	72
2. 습득 및 제출	72
3. 보관기간과 소유권	73
4. 경찰의 의무	75
5. 시설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	75
6. 보상금 및 수수료	76
7. 매각 및 폐기	76
8. 동물 취급	77
제 4 장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안	
- 취득시한의 단축을 중심으로	79
참 고 문 헌	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유실물이라 함은 일반 유실물외에도 문화재, 동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일반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시한의 단축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철도, 지하철, 공항 등 유실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여러 지역적 유실물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외에 통합유실물 센터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하기 위하여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이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하여 유실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유실물의 취득과 관련된 법적인 분석은 선의취득제도에 대한 선결적 고찰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은 축소하여 살펴보고 제253조의 규정과 이에 따라 제정된 유실물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다양한 유실물정보센터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기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7년 유실물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통합유실물 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 폰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을 전제로 한,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등 유실물 관련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민법의 관련 유실물 관련 규정과 이를 토대로 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일본의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민법의 관련 규정과 유실물법에 대한 조문별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유권 취득시한과 관련된 문제등과 더불어 전반적인 제도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의 유실물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았는 바, 여기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일부 지역 및 캐나다의 퀘벡주를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유실물법의 관련 조문들을 취득시한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취득시한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의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유실물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민법의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을 단축하는 개정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유실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실물법에서도 이러한 현대적 상황에 맞는 전면적인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안 특히 취득시한을 단축 문제를 검토해보기 위해 관련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국가들과 미국과 캐나다의 일부 지역의 유실물 관련 법규정과 운용상황을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유실물법과 다른 특징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의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그리고 기타 유실물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유실물법 관련 논문이나 참고문헌을 살펴보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독일 등 직접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였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트위터 등 새로운 정보 수집서비스들의 확산에 따른 유실물법의 개선에 관한 논문이나 기타 평석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2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으로 인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장 유실물과 우리나라의 관련법 체계

제 1 절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규정

중세 게르만법에서는 원소유자가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중세의 물건의 점유를 타인에게 부여한 경우(점유위탁물)에는 그 소유자의 추급권을 제한하였으나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물건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점유이탈물)에는 그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추급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대륙법계의 각국은 이 연혁적인 게르만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점유위탁물에 대해서는 추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점유이탈물에 대해서는 추급을 허용하여 선의취득자의 보호에 구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 민법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제250조의 특칙을 두고 있다. 중세의 독일법은 유실물습득에 관하여 특별한 제도를 발전시켰고 독일민법은 이것을 이어받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965조 내지 제982조). 이와 달리 프랑스 민법은 이를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2279조). 우리 민법은 프랑스법의 태도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50조는 선의취득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목적물이 원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이탈한 도품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선의취득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는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대부분 국가의 민법에서는 그러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¹⁾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는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서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유실물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유실물 습득). 이 경우에는 제 250조에 의한 유실자가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50조는 제249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제249조에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가 요건의 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제253조는 유실물 자체의 습득에 대한 규정이며 그 자체에 거래행위의 개입이 없으며 별개의 소유권취득 요건과 관련되어 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의 규정을 살펴보면 무주의 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야 한다(제1항). 이 점은 무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제252조 제2항) 구별된다.³⁾

1) 김상용, “동산물권(動產物權)의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한(韓) 독(獨) 비교(比較)”,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pp.16-18.

2) 우리 현행 민법은 「공고 후 6개월 내」(구민법 제240조)를 「공고 후 1년 내」로 연장하였다. 참고로 프랑스 민법은 3년(제2279조 제2항), 독일 민법은 1년(제973조), 스위스 민법은 5년(제722조)으로 하고 있다.

3) 또한, 국보나 보물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나 도난문화재는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재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9년 8월 헌법재판소는 “선의취득을 배제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이 자신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문화재매매업을 하는 A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실물 제도에 대해서 현행민법이 원권리자의 사정으로서 처분자의 점유에 의한 권리외관이 원권리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인지(점유위탁물) 혹은 원권리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점유이탈물)를 나누고 다시 후자에 있어서도 취득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인으로부터의 취득인지(제250조) 혹은 경매, 공개시장, 상인으로부터의 취득인지(제251조)를 나누어 규정하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대로 합리적 이유를 가진다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취득제도를 근대법이 지향하는 거래의 동적 안전과 신뢰의 보호를 위한 공신의 원칙이라는 이상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도품·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제250조와 제251조를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를 잃었으며 따라서 제250조가 적용되는 도품·유실물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도품·유실물 이외의 물건에 유추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 2 절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1. 의 의

유실물법은 유실물, 매장물 기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의 습득 및 반환과 관련된 절차와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

관관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제화·전문화되어 가는 문화재 절도, 밀거래, 도굴 등의 문화재 범죄에 대응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재에 대한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화재보호법 99조 4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장물이나 지정문화재인 줄 모르고 이같은 문화재를 ‘선의로’ 매입해 소장했다고 해도, 그 매입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양수인(구입자)이 경매나 문화재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유실물법은 1961년 12월 17일 법률 제 717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왔으며 일본의 유실물법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 2011년 5월 30일 최종 개정을 포함하여 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유실물법체계는 유실물법과 그 시행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은 없다. 우리나라의 유실물법이 민법의 유실물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조문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유실물법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도 11개 조문에 불과하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유실물법체계는 유실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문 수도 훨씬 많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2011년 5월 30일 개정 유실물법의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사유>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물건도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됨. 따라서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습득물을 제출받은 관리자로 하여금 그 물건이 반환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법률상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제1항).

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서 습득물을 제출받은 관리자로 하여금 그 물건이 반환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2. 주요 내용과 분석

(1) 유실물 습득의 법적 성격

유실물은 유실물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조). 습득(Fund)의 법률적 성질은 준법률행위, 특히 사실행위라고 할 것이다. 유실물에 관한 우리 민법 및 유실물법의 근본체계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그 근거에는 분실자로 하여금 소유권을 보유하게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은 분실자의 소유권 「회복」 불능에 뒤따르는 제2차적 규범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 민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은 규범취지로부터 습득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유실물의 개념

유실물법의 적용대상은 유실물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준유실물)이다.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하며, 동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도품」이라 함은 형법상의 절도죄의 객체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른바 잊은 물건(in Vergessenheit geratene Sache)의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어떤 자가 카메라를 어떠한 장소에서 가져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금방 찾으러 왔는데, 제3자가 가져간 경우에는 그

물건은 형법의 해석으로서는 도품이었으나 민법상으로는 점유자의 지배내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것이다.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⁵⁾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된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습득물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실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이러한 물건 예컨대, 휴대전화기를 습득하나 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⁶⁾

유실물법에 의하면 그 밖에도 점유자가 두고 간 것으로 인정된 물건(제11조),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및 유실한 가축(제12조)등을 유실물에 준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 가축 이외의 동물 즉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며,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민법 제252조 3항). 또한, 표류물 및 침몰물은⁷⁾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이 습득에 관하여는 모두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수난구호법 제20조(구조된 사람·

4) 諸哲雄,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저스티스, 통권 제67호 2002.6, 한국법학원. pp.57 이하.

5) 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6)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7) 5. “표류물”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상 또는 하천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6. “침몰품”이라 함은 점유를 이탈하여 해양 또는 하천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수난구호법 제2조).

선박·물건의 인계) 제3항에 의하면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또한 제22조(인계된 물건의 처리) 제1항은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⁸⁾, 제2항은 조난선박의 선장·소유자·운항자 또는 관리자(이하 “선장등”이라 한다)나 물건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장등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습득 및 보관

습득이라고 함은 유실물의 점유를 취득한 것을 말하며 단순한 발견이나 접촉은 습득이 아니다. 유실물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유실물이면 족하며 습득자가 유실물인지를 알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선점과는 달리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습득자는 행위무능력자일수도 있고 보조관계나 점유매개관계에 의한 습득도 가능할 것이다.

8) ③ 제1항의 경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④ 시장·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선장등에게 시장·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을 인수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인계받은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거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매한다는 뜻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상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신고서와 함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제1항). 경찰서라 함은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이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4) 반환, 공고 및 보관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공고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간 당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시행령 제3조 제1항), 제출된 습득물은 습득물(매장물)관리카드에 기재하여 보관처리하고, 습득물(매장물)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청구권자(유실자 또는 소유권자 기타 물건회수의 청구권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다만,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4항).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공고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인도)받는 자가 부담

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즉,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유치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 기타의 필요비는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받는 자의 부담으로 하며(유실물법 제3조). 습득자가 습득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때까지 습득자는 부득이 습득물을 상당한 기간동안 점유하는 수가 많다. 점유하는 동안 습득자는 그 물건의 보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보관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습득자가 귀찮아서 발견되었던 장소에 다시 가져다 버리는 경우나 중대한 과실로 부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실물습득은 사무관리에 특수한 형태에 불과할 뿐 아니라(민법 제 735조 참조) 발견자는 자발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므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이행보조자에 대하여도 그의 고의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만 책임진다고 할 것이다.

(5) 습득물의 매각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고, 매각에 드는 비용은 매각대금에서 충당하며 매각 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남은 금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보관한 물건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준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6)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경찰서장 등은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청구권자에 대하여 그 성명과 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청구권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기일을 지정하여 습득자와 보상금액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조 제1항) 청구권자의 성명과 주거를 습득자(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점유자가 있는 경우의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습득에 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한 습득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조). 법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법 제6조).

1) 소유자와 습득자간의 법률관계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한 때에는 유실물은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유실물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소유자와 습득자의 법률관계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규율할 것이다. 따라서 유실물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제734조 이하)이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와 점유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적용이 있는 수도 있을 것이다.

2) 보상금청구권의 성질

이와 같이 소유자와 습득자간의 법률관계는 사무관리이므로 습득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제739조 참조) 유실물법은

특히 습득자의 보상금청구권을 규정한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계이다.

3) 보상금청구권의 상대방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이다.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보상금청구권의 범위

그 범위는 유실물건의 가액의 5푼 이상 2할 이내이다(유실물법 제4조 이하). 그리고 선박차량건축물 등의 내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습득자와 점유자가 반씩 나누어 갖고(동법 제10조 3항), 이러한 경우 실제로 습득한 자는 점유자를 대위하여 그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의 기준인 유실물건의 가격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반환받을 당시의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 가격이어야 하므로 주관적 가치, 예컨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파이프에 대한 애착 등은 그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5푼 이상 2할 이하의 범위 내에서 유실자가 자유로이 그 보상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와 같이 자의로 그 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한도를 설치한 규정을 무의미하게 하므로 습득신고의 난이, 그 유실물의 소유권상실 내지 권리행사의 난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따라서 저금통장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수가 있다.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였다.⁹⁾

(7)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그 취득권을 포기하고 제1항의 예에 따를 수 있다(법 제8조 제2항). 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 경찰서에 소유자가 「나타나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현행 민법 제253조의 해석으로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유실자의 권리포기권(동법 제8조)과도 균형이 맞게 되기 때문이다. 공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유실물법과 그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습득에 관하여는 섭외사건이 빈번한데 그 준거법은 습득지법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 제7조). 물건을 반환받을 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습득자도 그 취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습득자는 원칙적으로 유실자와 습득자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소지가 예외적으로

9)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665 판결,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서울지법 1988.4.22. 선고 87가합4257 판결.

허용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그 습득자나 그 밖의 청구권자는 제14조에 따른 기간(6개월)내에 허가 또는 적법한 처분을 받아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6월이 내에 경찰서로부터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된다(동법 제14조, 제15조). 이러한 법률효과는 소유권포기의 의사표시를 의제한 것으로 볼 것이다. 표류물침몰물에 관하여는 습득자가 구청장 등이 지정한 기간 내에 물건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 등이 그 물건을 공매하여 대금에서 공고보관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시키고 부족하면 국고로부터 이것을 보급한다(수난구호법 제32조 4항).

(8) 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법 제9조).

(9)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도록 한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1항), 이 경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법 제10조 제2항).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점유를 잃자마자 선박차량이나 건축물 등의 점유자가 그 물건의 직접

점유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함은 관청, 학교, 교회뿐 아니라, 백화점, 개인병원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유실물에 대한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10) 소유권의 상실 및 국고귀속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며(법 제14조), 경찰서 등에서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보관한 물건으로서 교부받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한다(법 제15조).

(11)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및 인터넷

유실물법 제1조의2는 2011년 5월 30일 신설된 조항으로서 국가는 유실물의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등 관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 유실자가 관리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하더라도 손쉽게 자신의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확인과 반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장은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장이 관리하고 있는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 16조).

이에 따라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인터넷사이트인 <http://www.lost112.go.kr>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기관에서 7일동안 보관한 후 그 기간 동안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청유실물센터로 습득물이 이관됨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모바일서비스와 유실물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인 보관센터로는 서울청유실물보관센터, 부산청 유실물보관센터가 있으며 전화번호와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있다.

<유실물처리절차>10)



(12) 장물의 습득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물건은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공

10) <http://www.lost112.go.kr/html.do?html=/prevention/lostProcedures&sub=F&title=유실물처리절차>.

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1년간 환부(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1조 제1호 및 제2호). 경찰서장이 그러한 습득물이 장물(장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타인이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4항).

(13) 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일실)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하며,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 제12조).

(14)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에는 습득자의 소유로 되지 않고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¹¹⁾ 이 경우에는 습득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5조). 이 경우의 적당한 보상이라 함은 정당한 보상으로서 전술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기타 법령상의 유실물관련 규정

동물보호법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는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

11)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제1항), ② 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3항).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으며(제4항)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가 있으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가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제1항),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제2항).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문화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세법 제299조에 의하면 세관장은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제1항)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제2항).

수난구호법에서는 조난된 사람과 선박과 관련하여 표류물과 침몰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도 유실물 관련 조항들이 있다. 몇가지 주요 조문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표류물 또는 침몰품(이하 “표류물등”이라 한다)을 습득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표류물등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그 표류물등이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그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습득한 표류물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보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¹²⁾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동 제3항). 수난구호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인도받은 표류물등의 보관 및 보관사실(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금의 보관사실을 포함한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유실물법 시행령」 제1조제2항·제3항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에 예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는 외에 그 뜻을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하는 바, 유실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와 통지가 요구된다.

12) 1. 멸실·손상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 2. 폭발물·가연성의 물건, 보건상 유해한 물건 기타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및 3. 보관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것.

제3장 주요 국가의 유실물 관련 법령

제1절 일본

1. 2007년 유실물법의 전면 개정

(1) 배경

일본에서는 메이지 32년(1899년)에 제정된 「유실물법」이 100년 이상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1999년 마지막 개정되었으며 이 때까지의 유실물법은 구유실물법이라 부른다). 그 후 2006년 6월 개정 유실물법이 공포되어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중요한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이 개정 유실물법은 시대의 변화에 수반해 유실물을 둘러싼 상황도 변화가 고려된 내용들이 적지 않다. 일본에서 이 법률이 제정되었을 무렵에는, 교통망도 별로 발달하고 있지 않아서, 사람의 이동 등도 한정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유실물을 주운 사람은 근처의 경찰서, 파출소·주재소 등에 제출하고 분실한 사람은 그 주변의 경찰서 등에 유실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100년 이상 경과한 오늘날에는, 전철, 버스, 배,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 전국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분실한 장소, 주운 장소, 도착된 장소가 다르거나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유실물도 급증하고 있다. 2006년 동안, 일본 전국의 경찰에 도착된 습득물(주워진 유실물)은 약 1,222만점으로, 그 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여 왔다.¹³⁾

13)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2) 일본 유실물 법개정 주요 내용

1) 습득물보관기간의 단축

법 개정전까지는 경찰에 습득물이 도착되었을 물건의 유실자를 찾거나 유실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는 보관 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개정 유실물법의 부칙에 의해 민법 제240조를 개정하여 3개월로 단축하였다(법 제7조제4항). 이는 습득자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간이 6개월로부터 3개월에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습득물 정보의 인터넷으로 공표

각 도도부현내에서의 습득물의 정보가 집약되어 인터넷으로 주민에게 공표된다(법 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유실자가 스스로 습득물을 찾기 쉬워졌으며, 특히, 또한 고액의 물건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귀중한 습득물도 신고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유실자에게 단시간내에 반환될 수 있게 되었다.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공표 외에도 조기 발견·반환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경찰서장은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경찰서장에게 귀중한 습득물에 관한 통보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서장은, 습득물을 유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가 있을 때는,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찰서장이, 습득자 또는 유실자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 등을 고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3) 개인정보가 들어간 습득물의 소유권 취득불허

개인의 신분, 지위 또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증명하거나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록된 문서, 그림 또는 전자적 기록등에 대해서

는, 민법 제 240조등의 규정에 관계없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예컨대 휴대 전화나 카드류등 개인정보가 들어간 습득물은, 개인정보 보호등의 관점으로부터 보관 기간의 3개월 이내에 유실자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습득자에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4) 특례시설점유자 제도의 신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점유자로서 습득물이 다수이고 습득물을 적절히 보관할 수 있는 자(일정한 공공 교통기관 및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점유자. 개정유실물법에서는 「특례시설점유자」라고 한다.)는 2주간 이내에 경찰서장에 신고한 때에는 습득물(고액의 습득물등은 제외한다.)을 경찰서장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수 있다(법 제17조 이하).

특례시설점유자라 함은, 철도, 버스, 배, 항공기 등의 일정한 공공 교통기관의 시설이나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점유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업자는, 시설내에서 유실물이나 분실물을 취급할 기회가 많아 모든 습득물을 경찰서에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판단되어 유실물법 개정에 따라, 그러한 시설 점유자가, 2주간 이내에 습득물에 관한 사항을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습득물을 스스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특례시설점유자는, 경찰서장과 동일한 요건에 따라, 매각 및 폐기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특례시설에서의 습득물의 취급 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도 오늘날의 상황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습득자로부터 습득물의 교부를 받은 특례시설점유자는 습득자의 청구가 있으며 수령증을 교부해야 하며.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는 특례시설점유자에게, 해당 시설에서의 습득물에 관해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특례시설점유자가 보관하는 습득물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5) 습득물의 매각등에 관한 규정 정비

값싼 물건은 2주간 이내에 유실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습득물은, 지금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고 있었지만 유실물법 개정으로, 경찰서장과 특례 시설 점유자는, 보관에 비용이나 인력이 불합리하게 요구되는 가는 우산이나 의류 등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어 널리 판매되고 있는 값싼 물건 등은, 공고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유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제9조 제2항). 또한 경찰서장은, 매수인이 없었던 습득물 등에 대해서는, 폐기 그 외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 동물에 관한 취급 절차의 명확화

동물애호법의 규정에 의한 인수 대상이 되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개 또는 고양이」는, 유실물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의 대상이 된 「소유자의 판명 하지 않는 개 또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유실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1) 개요

일본법에서의 유실물의 대한 개념이나 반환 및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유실물법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의 유실물법체계는 민법의 유실물관련 규정등 다른 법에서도 유실물에 관한 일부 규정이 있으며 유실물법(44개 조문), 시행령(11개 조문) 및 시행규칙(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유실물법에서 시행규칙

이 없는 것과 대비되며, 법이나 시행세칙의 규정들은 대단히 방대하다. 아래에서는 일본 유실물법의 중요한 특징과 우리나라와 다른 규정 및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다만,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목적 및 정의 조항

일본의 유실물법은 유실물, 매장물 그 밖에 점유를 떠난 물건의 습득 및 반환과 관련된 절차 기타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조). 또한 물건, 습득, 습득자, 유실자 시설, 시설점유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는 바(제2조), 이를 통하여 보다 명확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물건에는 유실물, 매장물 외에도 준유실물을 착오로 점유한 타인의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및 일실한 가축으로 하고 있고 준유실물에 대해서는 민법의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3) 유실물의 반환, 제출 공고 등

유실물법에서는, 습득자는 신속하게, 습득을 한 물건을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경찰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의 규정에 의해 그 소지가 금지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물건 및 범죄의 범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유실물법 제4조 제1항). 시설에서 물건(매장물을 제외하다)의 유실물 습득자(해당 시설의 시설점유자를 제외한다)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그 물건을 해당 시설의 시설점유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유실물법 제4조 제2항).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 유실물법은 경찰서장이 공고함에 있어서 게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고의 방법 등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경찰서장은, 유실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제출을 받은 물건을 그 사람에게 반환하지만, 제출을 받은 물건의 유실자를 알지 못하고, 또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물건의 종류 및 특징, 습득 일시,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유실자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한, 기본적으로 3개월(매장물에 대해서는 6개월)¹⁴⁾ 동안 해당 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항을 게시한 서면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게시에 갈음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및 제2항).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습득공고는 경찰서장 등이 습득물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동안 경찰서 등의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유실물의 매각

또한 유실물법에서는 물건의 관리에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은, 제출받은 물건이 멸실·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대한 비용이나 수고를 필요로 할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매각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9조 제 1항).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의 유실물법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1. 우산이나 양산, 의류, 자전거 그 밖의 일상생활용으로 사용되고 많은 곳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는 2. 그 보관에 상당한 비용이나 수고가 필요한 것으로 정령이 정하고 있는 것인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2주일 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하고 있다(유실물법 제9조 제2항)

14) 유실물의 공고 기간은 2006년의 법개정에 의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다.

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1. 산(우산과 양산), 2. 의복, 3. 손수건, 머플러, 넥타이, 벨트 그 밖에 의복과 함께 몸에 부착하는 섬유 제품 또는 피혁 제품, 4. 신발 및 자전거 그리고 동물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유실물법 제2조 제1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물건의 소유권의 귀속

유실물은,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판명 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240조에 따라 이것을 습득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¹⁵⁾ 이 점은 우리나라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공고후 3개월 경과시 소유권 취득과는 크게 대비된다.

다만, 공고기간의 만료에 의해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을 때는 소유권을 상실한다(유실물법 제36조). 또, 금제품이나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습득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유실물법 제35조).¹⁶⁾ 일본 유실물법

15) 일본 민법 제240조는 2006년 유실물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개정되었는 바, “유실물은 유실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을 습득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제35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물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 240조 또는 241조의 규정 또는 제3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지가 금지되어있는 물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지할 수 있는 자로서 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개인의 인신전속적인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그림 또는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이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이 제35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물건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참고할만한 입법례라고 생각된다.

물건에 대한 권리의 포기 또는 권리 상실등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서 경찰서장이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도도부현, 유실물법의 특례 시설 점유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 특례 시설 점유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귀속하게 된다(유실물법 제37조 제1항). 다만, 금제품은 국가의 소유가 된다(유실물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물건은 모든 유실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또는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국가공안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한다(유실물법 제37조 제2항 및 제3항). 이러한 규정도 우리나라 유실물법에서는 없는 규정이다.

3. 습득자의 소유권 상실

일본 민법 제240조 또는 제241조의 규정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물건을 경찰서장 또는 특례시설 점유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을 때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제36조).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4조에서 “이 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본의 2개월에 비해 대단히 장기라고 할

수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기록된 문서, 그림 또는 전자적 기록
4. 유실자 또는 그 관계자라고 인정되는 개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기록된 문서, 그림 또는 전자적 기록
5.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이 기록된 문서, 그림 또는 전자적 기록 (널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서, 도화 및 전자적 기록을 제외한다).

수 있는 6개월로 하고 있다. 유실자의 권리보호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으로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유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 2 절 독 일

1. 개 요

독일 민법전(Bürgerliches Gesetzbuch) 제3편(물권법) 제3장(소유권) 제3절(동산 소유권의 취득 및 상실) 제6절(유실물) 제965조 내지 제984조는 우리나라의 「유실물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독일에서는 이 법에 따라 각주 및 특별시가 유실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19세기 중반 베를린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유실물 취급의 체제가 구축된 것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의 유실물 취급제도가 확립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서는 유실물 취급은 경찰의 소관 업무였지만, 전후에는 행정시스템의 개편, 특히 경찰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정책변경에 따라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기에 이른다.

2. 주요 내용

(1) 유실물의 습득 및 제출

가액이 10유로를 초과하는 유실물의 습득자는, 유실물 취급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물건의 가액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고 취급이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우리 나라와 다르다.¹⁷⁾ 민법의 유실

17) 현재 독일에서 유실물 제출처는 구청등의 「시민과」이다. 개정전 민법에서는 경찰서(Polizeibehörde)였다(민법 제965조).

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방치된 물건을 손으로 집어 든 때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방치된 물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습득자가 되지 아니한다. 10유로 이하의 물건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3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즉, 소유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물건을 버리는 것,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10유로를 초과하는 습득물을 소유하기 위한 행동을 한 자는 형법상의 횡령죄(3년 이하의 금고형)가 적용되게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적용사례는 없다고 한다.¹⁸⁾

베를린시 유실물관리소는 물건의 가액에 대해서는 먼저 습득자가 판단하되,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실물 관리소에 제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¹⁹⁾ 그런데, 베를린시 유실물 관리소는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완전히 정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액의 판단은 개개의 직원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사무소의 직원에 따라 가액 판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없으며,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습득자가 가액이 10유로 이하인 습득물을 제출하기 위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²⁰⁾

한편, 분실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베를린에서는 분실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실물 관리소에서는 편의적으로 자전거용 분실신고서를 작성할 뿐이다.²¹⁾ 또한 유실물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통장, 패스포트, 신용카드와 같이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물

18)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2

19) Ibid., p.3

20) Ibid.

21) 유실자(또는 습득자)가 신고를 위해서 유실물 관리소를 방문하면, 유실(습득)의 사실이나 시기·장소등을 구구도로 직원에게 신고하고, 담당 직원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PC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동시에, 그 데이터를 프린트 아웃한 것을 유실자(습득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만, 자전거용 유실계에 유실자가 필요 사항을 기입해 제출한다.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유실자를 찾아 반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물건들은 수수료 또는 보상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일에서의 유실물 취급의 기본적인 원칙은 소유권 보호에 있으며, 따라서, 통장 = 은행, 패스포트 = 행정 기관 ·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 카드 회사가 연락처가 된다. 또, 습득물은 「습득 가능하다는 것」(손으로 집어 습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차량(자전거를 제외한다)은 습득물(유실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

(2) 보관 기간과 소유권

습득자는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²²⁾ 10유로 이하의 저가인 물건에 대해서는, 습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10유로 초과의 물건에 대해서는 제출 후 6개월 경과 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²³⁾

(3)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

노상 등에서 습득된 10유로 초과의 물건은 그 유실물 취급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독일 민법은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과 관련하여, 「관공서의 구내 또는 대중 교통에 종사하는 교통기관의 건조물 또는 교통수단 내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즉시 물건을 해당 관청, 교통기관 또는 그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²⁴⁾ 이 경우, 습득자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한 동법 제965조 내지 제967조 및 제969조 내지 제97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독일철도(Deutschen Bahn, 구독일 국유 철도)는, 독일 민법 제978조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유실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²⁵⁾

22) 민법 제966조.

23) 민법 제973조.

24) 민법 제978조 제1항.

25) Deutschen Bahn 홈페이지(<http://www.bahn.de/>).

각 역에 제출된 습득물이 15유로 이상의 가액을 가진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물건은, 유실자를 위해에 4주간 보관된다. 4주간 경과 후에도 유실자가 판명되지 않는 물건은 Wuppertal(독일 서부, Ruhr Valley에 있는 도시) 유실물 관리소에 이송되어 매각된다.²⁶⁾

(4) 보상금

습득자는 유실자 등 수령권리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은 물건의 가액이 500유로 이하의 경우는 5%,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 동물의 경우는 3%로²⁷⁾ 규정되어 있다. 즉, 가액이 500유로 이상의 경우 500유로를 초과한 부분의 3%를 25유로(500유로×5%)에 가산한다.

보상금의 수수는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문제로서, 관공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절차에 개입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습득자로부터의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실자로부터 습득자에게의 보상금을 보관하여 습득자에게 수교한다. 유실자는 보상금의 지불을 거부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습득자는 유실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50유로 이상의 물건을 관공서 또는 공공교통기관내에서 습득한 경우, 보상금은 상기의 각각 2분의 1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액이 500유로이하의 경우는 2.5%, 500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된다.²⁸⁾

(5) 수수료

수수료는, 담당 직원이 판단하는 물건 가액의 10% 상당액으로 하고 있어 유실자가 물건의 반환을 받을 때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가

26)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4.

27) 민법 제971조 제1항.

28) 민법 제978조 제2항.

액을 정할 수 없는 물건(예를 들면, 패스포트나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 납부시에 발행된 영수증은 물건의 교환증이 된다. 수수료는 유실자에 대해서 청구되는 것이며 습득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위치에 있으므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물건을 인수하는 때에도 수수료의 지불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지불된 수수료는 경매의 매상액 등과 함께 시의 재원에 납입된다.

(6) 매각·폐기

관공서 또는 공공교통기관은, 인도된 물건을 경매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 연방주 및 시읍면의 관공서 및 공공교통기관은 그 직원에게 경매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²⁹⁾ 또한, 민법 제 980조 및 제98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고는 연방의 관청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관할 연방 장관이, 그 밖의 경우에는 연방주의 중앙관청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지만,³⁰⁾ 베를린시 등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별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³¹⁾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보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은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그 물건에 갈음하여 보관된다.³²⁾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하기 쉬운 물건은 유실물 관리소의 판단으로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경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7) 동물의 취급

독일 민법 제971조 제1항은 동물에 관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90a조는 「동물은 물건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29) 민법 제979조.

30) 민법 제982조.

31)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5.

32) 민법 제966조 제2항.

에 따라 베를린시 등의 유실물 관리소에서는 동물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베를린 시내의 동물 보호시설인 Tierheim Berlin은 도주하거나 일실된 개 등의 보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다.³³⁾ 그러나, Tierheim Berlin은 베를린시의 공공시설이 아니며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베를린시 유일한 동물보호시설이다.

제 3 절 프랑스

1. 개 요

프랑스에서는 국가차원의 유실물 관련법 규정인 「민법전(Code Civil, 1804년 편찬)」 제711조 내지 제717조 및 제2279조 내지 제2280조가 있다. 다만, 민법에서는 유실물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법규에 의해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중세시대에는 프랑스에서 유실물의 소유권은 왕, 귀족 또는 재판권을 가지는 영주에게 귀속되어 있었지만, 파리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에 대해서는 1804년 파리경찰청의 경찰청장 듀보와가 파리 시내의 각 경찰서에 습득물을 경찰청내로 이송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1830년 5월 23일의 왕령」에 따라 습득물은 국유재산 관리부(현재 재무부 산하에 있다)에 인도되었지만, 1893년에는 경찰청장 루이·레피누가 유실물 및 습득물을 취급하는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취급업무를 일원화시켰다. 1939년에는 현재의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가 파리시 제15구 Morillon가 36번지에 설치되었다. 1969년 제정된 Ordonnance는, 유실물과의 유분실물 취급업무를 규정하는 것이었지만,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의 조직형태에 관한 arrêté(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2000년 9월4일)에 의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3) <http://www.tierschutz-berlin.de/>

34) 민법 제717조.

<파리 경찰청 관내의 유실물에 관한 규정>

-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의 조직형태에 관한 arrêté(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2000년 9월 4일)
- 「파리 경시총감 arrêté 제00-11481호를 개정하는 arrêté 제01-17172호」(2001년 12월 19일)
- 「유실물 보관 요금을 정하는 arrêté 제2004-18253호」(2004년 12월 17일)

2. 주요 내용

(1) 습득 및 제출

파리 경찰청장 arrêté는 “파리 시내의 공공도로, 공공교통기관 차량 내, 공공장소 또는 사적 건조물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속 건조물에서 물품을 습득한 사람은, 24 시간내에 경찰서 또는 파리 제15구 Morillon가 36번지 소재의 경찰청 유실물과에 그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⁵⁾ 다만, 동 arrêté는³⁶⁾ 프랑스국유 철도(Socit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ais : SNCF)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³⁷⁾

습득자에 의한 제출은 원칙적으로 「의무」이지만,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이론상으로는 형법의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³⁸⁾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서는, 습득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습득자 장래의 권리를 담보하고 있다.

35)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의 조직형태에 관한 arrêté(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2000년 9월 4일) 제1조.

36) arrêté는 프랑스에서의 행정명령을 의미하며 1 또는 2 이상의 장관 또는 기타 행정당국이 발하는 일반적인 또는 어느 특정의 사항에 대한 집행적 결정을 말한다.

37)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의 조직형태에 관한 arrêté(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2000년 9월 4일) 제2조.

38)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7.

(2)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

시설에³⁹⁾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에 대해서는, 복수의 규정이 있다(8 페이지의 결(표)참조). 상점, 찻집, 극장 등에 대해서는, 습득자는 습득한 장소의 시설관리자 또는 자격 있는 직원에게 습득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자격 있는 직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회 상식·규칙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특별한 국가 자격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시설은, 유실물이 발생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국유철도에서의 습득물에 대해서는, 원래 파리경찰청장 arrêté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시설내에서의 습득에 관한 규정>

파리 경찰청장 arrêté에 규정된 시설	유실물의 취급방법
<p>파리교통공단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 RAT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TP의 철도·도로 교통망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동 교통공단의 자격있는 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습득물의 접수, 집약, 이관 및 반환은, 경찰청장이 승인한 특별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하여진다. - RATP의 담당 부서가 반환하지 못한 유실물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청 유실물과에 이관된다(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 00-11481호 제13조)
<p>공 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의 각 공항에서 물건을 습득자는 그 물건을 습득자는, 그 공항의 자격 있

39) 시설이란, 상점, 찻집, 공원, 극장, 종업원 50 명 이상의 소매점, 공항, 택시, 파리 교통 공단(RATP) 등을 말한다.

파리 경찰청장 arrêté에 규정된 시설	유실물의 취급방법
	<p>는 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득물의 접수, 집약, 보관 및 반환은 경찰청장이 승인한 규칙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행한다. - 반환되지 못한 유실물은 15일이내에 경찰청 유실물과에 이관된다(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 제14조)
<p>택시 · 렌트된 자동차 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기사는, 각 승차업무 종료후, 유실물수색을 위한 차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 현장에서 반환하지 못한 유실물은 24시간 이내에 경찰청 유실물과 또는 소관의 경찰서에 신고한다. - 운행 노선 사무소 또는 전세 자동차의 차고에서 습득된 유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 택시 승강장 또는 차고의 책임자가 상기 조항으로 정한 의무에 따른다. - 택시 · 전세 자동차 회사는, 경찰청장이 승인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자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유실물의 반환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물건을 경찰청 유실물과에 인도할 것인가를 곧바로 선택할 수 있다(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 00-11481호 제15조)
<p>상점, 찻집, 전람회장, 공원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구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경찰청 arrêté 제00-11481호 제1조에 근거하고, 습득자 명의로 유실물이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습득자는 유실물을 시설 관리자 또는 자격 있는 직원에게 인도할 수 있다(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 제16조).

파리 경찰청장 arrêté에 규정된 시설	유실물의 취급방법
<p>판매담당 종업원 50명 이상인 소매점, 극장, 영화관, 콘서트 홀, 카바레, 서커스 극장, 음악실등 (다만, 노천의 시설은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유실물과가 승인하는 보고서에 유실물 목록을 작성하되, 습득자 입회아래에서 습득 장소 및 일시를 기입한다. - 유실물은, 24 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또는 5일 이내에 경찰청 유실물과에 신고한다. - 유실물과는 각각의 제출된 유실물에 대한 수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각부서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것을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 당해 시설내에서 습득된 유실물이 경찰청 유실물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시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통고되는 유실물 보관기간인 5일의 기간 동안에는, 반환 청구자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자가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보고서에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파리 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 제 17조 및 제18조).

(3) 보관기간과 소유권

물건의 가액에 따라 보관기간(유실자의 권리주장 기간)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50유로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3개월, 50유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12개월을 보관기간으로 한다. 이와 같이 물건의 가액에 따라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다.

가액의 결정은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의 직원이 하게 된다. 담당자에 의해서 가액 결정이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공

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휴대 전화가 제출되었을 경우, 카메라 부착이면 50유로 이상, 카메라 비첨부이면 50유로 미만으로 통일하고 있다. 또한 물건에 대한 유실자 개인의 생각은 가액 환산시에 고려하지 아니하며, 고가의 습득물의 대부분이 보석장식품이므로 주 1회 보석감정인을 초치하여, 가액 판단을 의뢰하고 있다.⁴⁰⁾

유실자의 권리주장 기간 경과 후, 50유로 미만의 물건이면 1개월간, 50유로 이상의 물건은 6개월간으로 습득자의 권리주장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동 기간 내에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먼저 물건의 사용권을 획득한다. 그 기간 내에 습득자가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권은 국유재산 관리부에 이전된다. 습득자 또는 국유재산관리부가 사용권을 획득한 후, 3년 이내에 유실자가 권리주장을 한 경우, 습득자 또는 국유재산 관리부는 그 물건을 유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물건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이익과 동일한 금액을 유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즉, 습득자 또는 국유재산 관리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습득자 또는 국유재산 관리부가 사용권을 획득하고 나서 3년 경과 후가 된다.

한편,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독일에서 마찬가지로, 습득자는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유실자가 수수료의 지불을 거부한 경우, 법정 보관기간 중에는 물건을 보관하되, 보관기간(3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실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유실자의 수색 및 물건의 반환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에서는,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조사 팀을 편성하여 유실물의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회사에 연락하고, 휴대 전화는 내장

40)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8.

의 IC칩 번호를 휴대전화 회사에 통보한다. 이러한 회사들과는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연락하면서 우호적 협력 관계를 구축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유실자에게의 연락은 어디까지나 당해 회사에서 하게 되며, 유실물과가 직접 명의인에게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장 또는 역장 등에 제출된 습득물은, 1주 이내에 파리 경찰청 유실물과에 이관되지만, 운용상의 관례를 살펴보면 이관 전이라도, 각 서장·역장의 판단에 따라 유실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도 있다.

각 경찰서에 있어서의 반환 업무는, “150유로 이하의 물건은 담당 경찰의 책임으로 직접 반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⁴¹⁾ 따라서 수행되고 있다. 또한, 각 역 등에 제출된 습득물은, 가액의 여하를 불문하고 1주 이내에 유실물과에 이관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하게 유실자 본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물건의 가액에 관계없이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5) 보상금

「보상금에 관한 법규정은 없으며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문제로서 처리된다. 유실물과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쌍방의 주소·이름 등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지만, 감사의 편지등을 맡아 두었다가 습득자에게 보내기도 한다.

(6) 수수료

모든 유실물과 관련되는 보관 수수료를 5.10 유로로 정하고 있다. 물건의 가액이 762유로를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3%의 종가(종가)수수료를 징수한다.⁴²⁾ 즉, 762유로를 초과하는 금액 또는 평가액 부분에 3%를 곱한 금액이 5.10 유로의 고정 수수료에 추가되어 징수되는 것

41) 파리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를 개정하는 arrêté 제01-17172호 제1조.

42) 유실물보관료를 정하는 arrêté 제2004-18253호 제1조.

이다.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표로 지불하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유실자가 유실물을 인수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그 반환을 신청을 한다.

(7) 매각 · 폐기

보존이 불가능한 물건, 상품 가치가 없거나 거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관기간중이라 할지라도 폐기된다.⁴³⁾ 어떠한 자도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보관기간을 경과한 물건은, 국유재산관리부에 이관해,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다(신분증명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망가진 열쇠 등은 제외한다). 그 매각이익은 국고수입이 된다.⁴⁴⁾

(8) 동물의 취급

파리경찰청장 arrêté에서는, 유실물로서의 동물취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리경찰청 유실물과에서도 동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제 4 절 영 국

1. 개 요

「영국」은, 잉글랜드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세 지방을 병합함으로써 성립한 연합왕국이다. 그 동안, 각 지방간에 입법권한의 일부 이양 등이 진행되었고, 이양된 권한의 내용 및 정도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각 지방이 별개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43) 파리경찰청장 arrêté 제00-11481호 제5조.

44) 다만, 보관기간 경과 후(국유재산 관리부가 사용권을 획득한 후) 매각한 물건일 지라도, 3년 이내에 유실자로부터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매각이익과 동일한 금액을 유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영국, 특히 잉글랜드 및 웨일즈에서는, 전통적으로 관습법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초기의 코먼·로 원칙은 그 대부분이 관습법이며, 판례법도 이에 의거하여 형성되어 온 것이다. 영국, 특히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법은, 중세이래 관습법을 기초로 한 판례법에 따라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서의 민법전에 상응하는 법전이나 성문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정법의 증가와 더불어 불문법인 판례법의 명확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개의 입법이 판례법의 변경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개의 제정법의 배후에 있는 것은 판례법 체계이며, 잉글랜드의 전통에 의하면 판례법을 제정법이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 차원의 법률로서 「경찰(재산) 법(Police (Property) Act)」을 우선 들 수 있지만, 이 법은 경찰의 보관단계까지 이르게 된 물건에 관한 법률이다. 「경찰(재산) 법은, 범죄 수사의 대상인 물건이 수사 후에 경찰의 보관 하에 있었을 경우를 규정하는 법률이며, 반드시 공도에 있어서의 유실물 및 습득물에 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영국의 법제도에 의하면, 유실물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판례법에서 구해야 하는 바, 보석류 등, 고가의 물건과 관련된 판례는 드물게 존재하지만, 이러한 재판은 판례법형성권한을 가지지 않는 County Court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결이 선례구속성을 가지는 판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영국에 서는, 일반적인 유실물 취급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할 뿐이다.

영국의 수도 런던을 포함하는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각주 경찰이 유실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런던경찰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 구의 경찰서(Borough Police)가 유실물을 취급하고 있다. 런던 경찰청 관내의 공도에 있어서의 유실물에 대해서, 런던 경찰청은 습득자는,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언제든지, 해당 물건의 유실자를 확인하

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습득자가 강구해야 할 적절한 수단」에 대해서, 「물건을 공도 또는 공공의 장소에서 습득했을 경우에, 물건을 경찰에 제출하는 행위는, 습득자가 유실자를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⁴⁵⁾

이를 게을리하면, 「1968년 절도법(Theft Act 1968)」에 의해 「습득물 횡령(Theft by finding)」 죄를 추궁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수단」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법의 위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습득시의 상황, 물건의 종류 및 가액, 또, 현실적으로 보고, 습득자가 유실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기준에 따라 내려지게 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법원의 판단 기록은 축적된 바가 없으며, 유실물을 돌려싼 재판사례도 극히 드물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실상, 습득자가 습득물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추궁 받게 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한다.

2. 주요 내용

(1) 습득과 제출

습득자에 의한 습득물의 제출에 대해서는, 「물건의 습득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는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습득자 자신이 보관하도록 권고된다」⁴⁶⁾라는 하는 점이, 유실자등에 반환할 수 없는 습득물은 모두 경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크게 다른 점일 것이다. 습득자가 습득물을 경찰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다.

45)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13.

46) http://www.met.police.uk/barnet/calling_in.htm.

- 습득자가 경찰관 또는 근무중의 일반직원인 경우
- 습득자가 18 세 미만인 경우
- 습득물이 경찰의 건조물 혹은 경찰차량으로 습득된 경우
- 습득물이 범죄에 사용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습득물의 기밀성이 높은 경우
- 습득물이 위험물인 경우(무기, 탄약, 폭발물 등)
- 습득물의 가액이 50 파운드 이상인 경우
- 습득물에 유실자의 단서가 드러난 경우
- 습득물이 수표, 신용카드, 전당표, 문서인 경우
- 습득물이 전자기억매체인 경우
- 습득물이 소유를 금지되고 있는 경우(약물 등)

한편, 런던·택시(통칭 : 블랙 택시)의 운전기사는 24시간 이내에 차내의 유실물을 런던 경찰청 관내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⁴⁷⁾ 런던 택시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에 대한 취급 책임은, 2000년 7월에 런던 경찰청으로부터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TfL)에 이관되었지만, 운용상, 런던 경찰청은 현재에도, 런던택시내의 유실물을 수령하여 기록할 의무를 지고 있다. 다만,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경찰에 제출된 물건은, TfL에 이관되어 보관 및 반환 업무는 TfL이 수행하고 있다. 이관전에 유실자가 경찰서에 출두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물건을 직접 유실자에게 반환하는 것도 가능하다.⁴⁸⁾

(2) 보관 기간과 소유권

런던 경찰청 관내의 경찰서는 유실물을 제출된 때로부터 6주(다만, 유실자의 권리 주장 기간은 4주) 동안 보관한다. 제출된 때로부터 4주가 경과한 후, 2주의 기간 동안 습득자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 물건의

47) 1934년 런던택시령.

48)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16.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귀속된다. 원칙적으로 6주간의 보관 기간을 경과한 물건은, 경매에 의해서 매각되거나 폐기된다. 그러나, 소정 기간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습득자도 많기 때문에, 운용상 1년간의 보관 기간을 거쳐 물건을 처분하고 있다. Barnet 경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내용⁴⁹⁾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는 습득자의 권리 주장 기간(2 주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습득자에 대한 주의사항>

당신이 습득물을 경찰에 제출한 때에는, 이름 및 주소를 물어 수령증이 교부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했을 경우에 당신이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일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에게 귀속합니다(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당신이 물건을 제출한 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이에, 수령증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출두해 주십시오.

(3)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

런던 경찰청 관내의 각 구 경찰은 노상 등에서의 유실물에 대해 취급하며 사유 건조물내에 있어서의 유실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유 건조물내에 있어서의 유실물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조물의 소유자가 처리한다. 이것은, 독자적인 유실물 취급 순서를 정하고 있는 국유 또는 사유의 교통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바네트 경찰에서는, 런던 지하철(London Underground), 런던 버스(London Buses), 런던 택시(London Taxis), 도크 랜즈 라이트 철도(Docklands Light Railway), 빅트리아 코치 스테이션(Victoria Coach

49) http://www.met.police.uk/barnet/calling_in.htm

Station)에서의 유실물에 대해서는, TfL가 취급한다는 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안내문에 런던·택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런던 택시 내에 있어서의 유실물은 택시 운전기사가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그 후 TfL에 이관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4) 보상금 및 수수료

런던 택시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득물에 대해서 습득자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실자의 임의에 의한 보상금의 지불은 있지만 수수료 및 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런던택시내에서 습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유실자에게 규정된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그 중에 습득자에게의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⁵¹⁾ 수수료는, 동전, 지폐, 금(gold) 또는 은(silver) 제품, 보석류, 시계(제1류)와 그 외의 물건(제2류)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제1류의 물건에 대해서는 제2류에 속하는 물건에 비교해 약간 비싼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다. 예컨대, 50파운드 가액의 물건의 수수료는, 제1류가 7.39 파운드, 제2류가 6.60 파운드이며 500 파운드 가액의 물건에 대해서는, 제1류가 31.50 파운드, 제2류가 28.21 파운드이다. 또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최저 0.8 파운드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500 파운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는 1 파운드에 대해 0.1 파운드씩 과금되어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⁵²⁾

TfL는 특례로서 유실자에게 휴대 전화를 반환할 때의 신고가액 기준을 100 파운드로 하여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으므로, 각 구 경찰에서도 TfL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휴대 전화에 대해서는 같은 수수료를

50) http://www.met.police.uk/barnet/calling_in.htm.

51) 1934년 런던택시령.

52)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p.18

징수하고 있다. 즉, 제2류로 분류되는 휴대 전화에 대한 수수료는 100 파운드의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액의 11.62 파운드이다.

(5) 매각 및 폐기

각 경찰서에서 매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물건은 폐기처분이 되기 때문에,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개봉된 통조림 또는 병조림 이외의 식료품, 사용 중의 화장품, 소비 기한을 경과한 소모품, 패스포트나 면허증 이외의 개인적인 서류 등을 들 수 있다.

(6) 동물 취급

경찰에서는 도주한 개와 관련되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⁵³⁾ 유실자는 경찰이 아니라, Battersea Dogs and Cats Home,⁵⁴⁾ 각 구의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 보호관에 문의하게 된다. 또한, 주운 개가 경찰에 도착되었을 경우, 통상, 12시간 동안만 경찰서에서 보호하고 그 후에는 Battersea Dogs and Cats Home으로 이송한다.⁵⁵⁾

<경찰의 보호하에 있는 개의 반환과 관련되는 비용>

업무내용	요 금	비 고
개의 반환	25파운드	그 외 체경비(의료비등) 다만, 도그 푸드등, 소액 비용은 면제

경찰의 보호하에 있는 개의 이관처인 Battersea Dogs and Cats Home은 1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는 영국의 대표적인 동물 애호 단체이

53) http://www.met.police.uk/barnet/calling_in.htm.

54) Battersea Dogs Home은, 1883 년부터 고양이의 보호 활동도 하고 있으며 그 후 Battersea Dogs and Cats Home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5) http://www.met.police.uk/barnet/calling_in.htm.

며,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기부나 영국 왕실의 원조를 받아 개와 고양이의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⁵⁶⁾

제 5 절 미 국

1. 개 요

미국에서는 연방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과 주의 이중적인 주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연방 및 주 모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다. 판례법주의에 입각한 국에서, 제정법은 미국 전 국토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50주 및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가 제정하는 주법 및 특별구법뿐이다. 각주는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형사법이나 재산법등 특히 주내의 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정법을 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마다 법령의 내용이 다르다. 유실물 취급에 관한 연방차원의 관련 법규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주 및 특별구 등의 자치체 차원에서 규칙을 마련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각 경찰 차원에서 처리매뉴얼을 정비하여 처리하는 곳도 있다.

2. 뉴욕주

(1) 관련 주법 규정

네덜란드의 식민지이었던 뉴욕주는, 미국 각주중에서도 대륙법의 역사를 가지는 주로서 알려져 있다. 뉴욕주에서의 유실물 취급에 대해서 「뉴욕 주법(New York State Consolidated Laws)」 제7조-B §251 내지 §258로 규정하고 있다.

56) <http://www.dogshome.org/index.html>.

(2) 습득 및 제출(뉴욕 시내)

뉴욕 주법 제7조-B는 뉴욕 시내에서 가액이 20달러 이상인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또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인 것을 알면서 가액이 20달러 이상인 물건(증권·증서류는 모두 이에 해당)을 입수한 사람은, 습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해당 물건을 유실자에게 반환하거나, 습득된 시의 경찰서 또는 경찰본부에 물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⁷⁾

이 규정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고의로 게을리 한 사람은 1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거나 양자가 모두 병과될 수 있다.⁵⁸⁾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뉴욕주에 있어서는 습득자에 의한 일정 가액 이상의 습득물의 제출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0달러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습득자가 유실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적당한 노력을 해도 반환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습득으로부터 1년 후에 습득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⁵⁹⁾ 10달러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3)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뉴욕 시외, 주립 공원 및 주립 대학 등)

습득 장소가 뉴욕 시내가 아닌 경우의 물건 제출처가 상세하게 지정되어 있다. 주립 공원이나 뉴욕 주립 대학 등, 뉴욕 주법 제7조-B에 의해서 지정된 시설은 물건의 보관, 반환 및 처분이라고 하는 일련의 유실물 취급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⁶⁰⁾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

57) 뉴욕주법 제7조-B §252.1 및 §252.2.

58) 뉴욕주법 제7조-B §253.

59) 뉴욕주법 제7조-B §257.2.

60) 뉴욕주법 제7조-B §252.1.

출처는 「경찰」이며 결국, 뉴욕주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 업무는 주 경찰 이하, 지방 경찰, 주립 공원 경찰서 또는 주립 대학 경찰 등이 관할하는 것이다.

<시설내 습득에 관한 규정>

- 공공의 건물, 토지 또는 구내에서 습득했을 경우 : 주 정부 제8청사의 경찰
 - 시외에서 습득했을 경우 : 주 경찰의 본서 또는 지서, 시읍면의 경찰서 또는 경찰 본부(보안관 사무소를 포함한다)
 - 주립 공원, 공원 도로, 레크리에이션 시설, 또는 사적을 구성하는 건물, 토지 또는 구내에서 습득했을 경우 : 주립 공원 경찰서
 - 뉴욕 주립 대학에서 습득했을 경우 : 주립 대학에 의해서 임명된 경비 담당관 또는 경찰관

또한 공공 교통기관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에 대해서는 각 교통기관의 관할이 되고 있어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다.

(4) 보관기간과 소유권

뉴욕주의 유실물 취급에 관한 특징도 역시 물건의 가액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다르다는 점이다. 물건, 또는 물건의 보관 및 매각과 관련되는 비용을 공제한 매각 대금은 경찰이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한다. 물건의 가액에 따라 4종류의 보관 기간을 두고 있는 점도 대단히 독특한 특징이다. 유실자가, 타당한 관련 비용의 모두를 지불하면 물건은 유실자에게 반환되지만 보관 기간의 만료 시점에 유실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권리 주장을 하여 적절한 비용의 모두를 지불하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이전된다.⁶¹⁾

61) 뉴욕주법 제7조-B §254 및 §254.2.

<물건 및 매각대금의 보관기간>⁶²⁾

- 100 달러 미만 : 3개월
- 100 달러 이상 500 달러 미만 : 6개월
- 500 달러 이상 5,000 달러 미만 : 1년
- 5,000 달러 이상 : 3년

(5) 보상금 및 수수료

뉴욕 주법 제7조-B에 대해서는, 보상금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매각 및 폐기

보관 기간 만료 후 10일 경과할 때까지 권리 주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물건은 경매에 의해 매각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끝난 물건 등 잔존 가치 밖에 갖지 아니한 물건 또는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보관기간 중에도 「신속하게」 물건을 매각한다.⁶³⁾ 또한 처리 비용, 통지 비용 및 다른 특별 비용의 총액이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물건도⁶⁴⁾ 경매에 의해서 매각한다. 물건의 매각 대금은 보관 장소가 주 경찰의 경우에는 주의 유기물 기금에 주 경찰 이외의 경찰서의 경우에는 시·읍·면에 기탁된다.

(7) 동물의 취급

동물은 뉴욕 주법 제7조-B가 규정하는 금전, 증권·증서류, 상품, 동산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⁶⁵⁾

62) 뉴욕주법 제7조-B §253.7.

63) 뉴욕주법 제7조-B§253.5(a).

64) 뉴욕주법 제7조-B§253.5(c)

65) 뉴욕주법 제7조--B§251.1.

3. 캘리포니아주

(1) 관련 주법 규정

스페인 통치의 영향을 받은 캘리포니아주도 역시 대륙법의 역사를 가지는 주이며, 주 민법이 제정되어 있다. 유실물 취급에 관한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민법(California Civil Code)」 제2080조 내지 제2080.10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습득 및 제출

캘리포니아주 민법은 습득자의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가액이 1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해당 물건을 시 경찰 또는 읍 보안관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⁶⁾ 시 또는 읍의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소는 유실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유실자의 신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및 반환청구 장소를 그 유실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⁶⁷⁾

(3) 보관기간과 소유권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소가 물건을 보관하는 기간은 90일이며, 그 사이에 유실자가 출두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한 후, 「모든 적절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해당 물건은 유실자에게 반환된다.⁶⁸⁾ 물건의 신고가액이 250달러 이상이고 90일 이내에 유실자에 의한 권리 주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일반 신문에 1회 이상 공고를 게재

66)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1항(a)호.

67)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1항(b)호.

68)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2항.

한다.⁶⁹⁾ 첫 번째 공고 게재 후 7일 이내에 유실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지 아니한 경우,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한 습득자에게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한편, 물건의 가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 90일 이내에 유실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공고없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이전된다.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물건의 가액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유실물의 보관, 반환, 매각 및 폐기는 시경찰 및 읍 보안관 사무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행하여지지만, 유실자 및 습득자 쌍방 모두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 물건의 보관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시경찰 및 읍 보안관 사무소 규칙에서도 캘리포니아주 민법의 규정에 따라⁷⁰⁾ 「미청구된 물건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하고 3개월 이상의 보관 기간 경과 후에는 물건을 경매에 의해 매각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4)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

시경찰 및 군 보안관 사무소 이외의 시설이 취급하는 유실물의 보관, 반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업무 일반은,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대학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평의원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⁷¹⁾ 다만, 시경찰 및 군 보안관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공공 기관 또는 대학이 제정하는 규칙에서도 a. 미청구된 물건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할 것, b. 3개월 이상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청구인 채로 남아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경매에서 최고 금액의 입찰자에게 매각할 것, 군내에서 발행되는 일반 신문에, 매각에 관한 공고

69)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3항(a)호.

70)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4항.

71)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6항, 제2080조제8항 및 제2080조제9항.

를 예정된 매각 일로부터 5일 이상 이전에 1회 게재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⁷²⁾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 업무는 각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 기관 및 대학 등에서 독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유실물 및 유실물 취급 업무의 일원적인 관리는 행해지고 있지 않다. 범죄와 관련된 것은 예외이지만, 유실물 취급은 경찰의 중요한 업무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유실물 취급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보상금 및 수수료

경찰서 또는 보안관 사무소는, 물건의 보관 및 관리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적절한 수수료」를 유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⁷³⁾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6) 매각 · 폐기

보관 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유실자 및 습득자로부터의 권리 주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물건을 자치체의 구매보관 기관에 이송하여, 이관된 물건을 공공 용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물건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⁷⁴⁾ 또한 적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실자가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발견되었으나 수수료의 청구에 대해서 그 납부를 거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⁷⁵⁾

72)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제6항, 제2080조제8항 및 제2080조제9항.

73)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조제1항1(b)호.

74)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조제4항.

75)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조제5항.

- a.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b. 수수료가 물건 가액의 3분의 2에 달하는 경우

(7) 동물 취급

캘리포니아주 민법 제2080조는, 위해, 방치, 익사의 위험 또는 기아로부터 구출된 가축(domestic animal)에 대해서도, 유실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⁶⁾ 또한 살아 있는 가축을 보유하게 된 사람은, 인도적 배려를 가지고 해당 가축을 취급하여야 한다.⁷⁷⁾

4.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1) 관련 특별구법 규정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법(District of Columbia Code)」§5-119.01 내지 §5-119.19에, 수도경찰재물관리계가 취급해야 할 「유실자가 불명하고 과실, 부주의 또는 실수에 의해 우연히 또는 본의 아니게 유실자의 손을 떠난 모든 개인 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⁸⁾

(2) 습득 및 제출

콜롬비아 특별구법은 습득자의 습득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수도 경찰의 보관단계에 까지 이른 물건 전반의 취급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로에서의 유실물 및 습득물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 경찰의 훈령 매뉴얼로서 「일반 명령(General Order) 601.1」이 있지만, 이 문서는 공표를 위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승

76) 캘리포니아주민법 제2080조.

77) 캘리포니아주민법 제2080조.

78) 콜롬비아특별구법 § 5-119.01(b)(1)

인과 내부의 결재절차가 필요한 내규이며, 내용도 습득물이 경찰에 제출하였을 때의 담당관의 처리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3) 보관 기간과 소유권

습득한 사람이 제출하여 수도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의 유실자가 판명된 경우, 재물 관리계는 통지송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통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유실자의 권리 주장이 90일의 경과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공고 후 45일을 유실자의 권리 주장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⁷⁹⁾ 그 기간 동안 유실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물건에 대한 권리는 습득자에게 이전된다. 유실자 및 습득자 모두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은 특별구 정부에 이전되어 특별구 정부에 의한 공적인 용도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⁸⁰⁾

(4)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

콜롬비아 특별구법은 시설에서의 유실물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운용상, 예컨대 워싱턴 수도 교통국(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 WMATA)은 인터넷홈페이지를⁸¹⁾ 활용하여 독자적인 유실물 취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WMATA는 자신의 보관에 까지 이르게 된 유실물의 보관기간을 「30일」로 설정하고 있으며, 유실자 자신에 의한 온라인 검색시스템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유실자가 입력한 물건의 정보와 합치하는 것이 있으면,

79)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10(a). 공고는 2회(주 1회 2주 연속하여 게재) 콜롬비아 특별구내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며 유실자의 권리주장기간은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80)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10(b).

81) <http://www.wmata.com/>

WMATA의 담당자가 유실자에게 그 취지를 연락한다. 유실자는 해당 물건을 인수하러 가거나 또는 WMATA에 물건의 우송을 요청할 수 있다.

(5) 보상금 및 수수료

콜롬비아 특별구법은, 물건의 보관, 반환 및 매각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정한 것일 뿐이며, 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콜롬비아 특별구장은 물건의 보관과 관련되는 비용을 정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별구장은 물건이 보관일 1일당 보관업무가액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보관 금을 정하여 해당 물건을 유실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그 요금을 징수한다.⁸²⁾ 징수 대금은 콜롬비아 특별구의 명의로 재무부에 기탁된다.⁸³⁾

(6) 매각 · 폐기

매각 가치가 없는 물건은 유실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유실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없으면 폐기처분이 된다.⁸⁴⁾ 또한 보관 요금이 물건가액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그 물건은 보관 기간 중인 때에도 경매에 의해 매각되며,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한 멸실 ·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도 즉시 매각된다.⁸⁵⁾

(7) 동물 취급

콜롬비아특별구법은 일반의 유실물에 대해서 90일간의 보관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20일의 기간 동안 권리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

82)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09(d)(2)

83)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09(d)(3).

84)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06(e).

85)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09(d)(2)급비§5-119.13.

한 말(마) 및 그 밖의 동물은 10일 동안 공시한 후, 해당 동물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⁶⁾

제 6 절 캐나다(퀘벡주)

1. 관련 법규정

캐나다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방의회 또는 주·준주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법외에도 관례 법주의의 전통에 따라 불문법도 존재한다. 구 종주국인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퀘벡주는 프랑스 민법전의 제원칙에 기초를 둔 대륙법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1991년 구 퀘벡주 민법인 Code civil du Bas-Canada(1866년 제정)에 대신하는 퀘벡주 민법전(Code civil du Quebec)을 제정하였다. 퀘벡주에서의 유실물 취급에 대해서는, 퀘벡주 민법전 제2장 「유실된 또는 버려진 동산」 제939조 내지 제946조에 규정되어 있다.

신민법의 제정 이전에는, 유실물이 습득된 경우, 경찰이 해당 물건을 1개월간 보관하고, 그 기간중에 유실자로부터의 반환 청구가 없으면, 습득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지만, 신민법에 유실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유실물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해졌다. 유실물 취급 업무의 취급 주체는 경찰이지만, 지방자치체등 공적 기관도 유실물을 취급하고 있다.

2. 습득 및 제출

퀘벡주 민법은 유실물 또는 버려진 물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습득자는 유실자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자를 발견한 때에는 물건을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⁷⁾ 습득자가 습득물을 경

86) 콜롬비아특별구법 §5-119.12.

87) 퀘벡주 민법 제940조.

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습득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실자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경찰관(agent de la paix), 지방 자치체, 또는 물건의 습득을 한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물건을 습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물건 또는 물건 매각대금의 소유권을 시효에 의해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습득물 횡령죄를 추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유실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물건 또는 가액이 경미한 물건의 경우에는 습득한 시점에서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한 필요가 없다.⁸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유실자로부터의 문의에 대비하여 물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물건의 사진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한 신고에 기초하여, 습득자는 자신이 물건을 보관할 것인지 신고를 한 대상에게 물건을 제출한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습득자가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민법 제940조의 규정에 따라 습득자는 유실자의 발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일시적 보관 유지자」로서 물건의 「이용권」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습득자는 시효에 의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가, 또는 물건을 매각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찰, 지방 자치체 및 습득을 한 장소의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습득자 개인도 물건의 보관 및 매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규정과 크게 다르다.

3. 보관기간과 소유권

유실된 또는 버려진 동산으로서 제3자의 수중에 있거나 또는 국가 기관에 방치된 물건의 소유권은 유실자에 속하지만 동시에, 습득자에

88) 소유자가 없는 동산의 소유권은 최초로 그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귀속된다(퀘벡주 민법 제 935 조). 그러나 물건의 가액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의한 물건의 소유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고 있다.⁸⁹⁾ 시효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퀘벡주 민법은, “동산의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3년 경과 후에 당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⁹⁰⁾ 유실물도 동산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유실물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위한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⁹¹⁾ 이 기간은 습득자가 습득의 사실을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유실자는 시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942조의 규정에 의해, 습득자에 의한 습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또는 물건이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유실자의 권리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습득물의 보관자는 경매에 의해 물건을 매각할 수도 있다.⁹²⁾ 이것은, 퀘벡주 민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상당수의 시민들이 습득물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제출처인 「시·읍·면이나 경찰서가 유실물로 가득차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다. 물건의 매각은 물건이 습득된 지방에서 발간되고 있는 신문에 「물건의 내용, 습득 장소 및 매각의 일시」에 관한 공고를 게재해, 게재일로부터 10일 경과 후에 행하여야 한다. 경매에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수의의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선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에 의하여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보유하는 것으로써 시효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매각 대금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규정⁹³⁾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습득자에

89) 퀘벡주 민법 제939조.

90) 퀘벡주 민법 제2919조.

91) 퀘벡주 민법 제2917조.

92) 퀘벡주 민법 제942조.

93) 퀘벡주 민법 제939조.

의한 10년 동안의 물건 또는 매각 대금의 보유가 요구된다. 또한, 물건 매각 후 시효 성립까지의 10년간 이내에 유실자가 권리 주장을 한 경우, 습득자는 물건의 매각 대금을 유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물건을 습득한 사실의 신고일로부터 10년간은 습득자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보유자」이며 물건의 「이용권」을 얻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경찰의 의무

습득물을 제출받은 경찰의 유실자 확인방법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경찰의 운용규정인 종합운용규정-06(OPR.GN-06)은 유실자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휴대 전화와 같이 식별가능한 물건의 경우, 그 식별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물건이 도난품으로 신고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도 참조해야 한다.

5. 시설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

공공교통기관 및 대규모 소매점등 시설은, 그러한 대부분이 공중에 개방된 개인소유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와는 달리, 해당시설의 소유자가 습득물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습득물의 관리를 담당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한 시설의 소유자는 습득물의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그 피고용자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도록 되어 있다. 민법 제941조의 규정에 의해, 습득자는 습득물을 습득한 장소의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출받은 그 장소의 관리자는 경찰에 그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즉, 경찰은, 공공교통기관 등의 시설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유실물 취급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6. 보상금 및 수수료

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유실된 또는 버려진 물건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유실자에게 요구된다.⁹⁴⁾ 해당 물건의 보관자는 유실자에 의해서 지불이 완료할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물건이 이 처분된 경우, 유실자는 잔존하고 있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관리비 및 처분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 매각 및 폐기

멸실·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즉시 물건을 폐기할 수 있다.⁹⁵⁾ 또한, 퀘벡주 민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보관하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관한 통지를 하고 10일이 경과한 후, 물건을 경매에 의해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⁹⁶⁾

- a. 유실자가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그 반환을 요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물건의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경우
- b.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명확한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국이 소정의 기간내(60일 이내)에 그것을 증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 c. 물건이 재판소의 서기국에 예탁되고 있고, 유실자에게 해당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방문하도록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실자가 출두하지 아니한 경우

94) 퀘벡주 민법 제946조.

95) 퀘벡주 민법 제942조.

96) 퀘벡주 민법 제943조.

- d. 유실자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소송이 취하된 후 6개월을 경과한 때까지 유실자가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 출두하지 않았던 경우.

8. 동물 취급

법률상 가축은 동산으로 볼 수 있지만, 유실된 또는 버려진 동산에 관한 취급을 규정하고 있는 퀘벡주 민법 제939조 내지 제946조에서는, 동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제 4 장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안 - 취득시한의 단축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유실물관련 법제도와 운영 상황은 각국의 문화·사회·풍토를 바탕으로 하여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실물에 대한 단순한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자기책임에 대한 태도가 유실물 취급 법제도 및 운용에 현저하게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실물 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역사와 사회적 상황을 가진 주요 국가와 지역의 법과 제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은 민법전 제965조 내지 제984조에서 유실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우습득물 취급 주체가 경찰이 아니고, 지방 자치체인 것, 또,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물건은 가액이 10유로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건의 가액에 의해서 취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프랑스는 민법전 제711조 내지 제717조 및 제2279조, 제2280조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각 행정 단위에 따라 개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예컨대, 파리에서는「파리 경찰청장 arrêté」에 파리 경찰청 관내에서의 유실물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파리에서는 물건의 보관기간(유실자의 권리 주장기간)이 그 가액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가액이 50유로 미만의 물건은 3개월, 50유로 이상의 물건은 12개월).

이와 같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물건 가액에 따라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일견하여 대단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가액의 판정을 담당 직원의 주관 하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실

물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실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유실자와 담당 직원간의 판단의 차이로 전혀 다른 결과도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관습법의 제도가 뿌리 내리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대단히 내용이 부족한 성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판례법 및 판례법에 근거해 제정된 성문법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지만, 유실물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판례법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방의 법원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 구속성을 가지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유실물 취급은 각 행정단위의 경찰에서 운용 매뉴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 모두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유실물 관련 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법 및 특별구법에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각각의 경찰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된 유실물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주의 역사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미국 각 주중에서도, 대륙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뉴욕주의 유실물 관련 규정은 주법 제7조-B§251 내지 §258이다. 뉴욕주도 물건의 가액에 따라 제출대상이나 보관 기간을 달리 규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도 제2080조 내지 제 2080.10조에 유실물 취급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유실물중 제출 대상도 뉴욕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가액(100 달러)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콜롬비아 특별구법 §5-119.01 및 §5-119.19은 수도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재물(property)의 전반적인 취급과 관련된 규정이지만, 동법의 「재물」의 정의는 유실물로 한정되지 않는다.

북미에서 대륙법의 영향의 강한 캐나다의 퀘벡주는 주 민법전 제 939조 내지 제946조에 규정된 유실물 취급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입법례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습득자

는 유실물을 유실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는 있지만, 제출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유실물의 보관에 대해서는, 습득자 또는 제출받은 지방 자치체나 경찰이, 습득자의 의향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2006년 개정 유실물법은 대폭적으로 소유권 취득시한을 단축하였음을 이 보고서의 여러 군데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어떠한 면에서 볼 때, 일본의 개정 유실물법은 민법의 유실물 취득시한 단축과 더불어 많은 개선사항들을 담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소유권 취득시한에 대한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먼저, 유실자의 소유권 보호라는 법익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유실물정보 수집의 용이성 증가와 유실물처리 기관의 유실물 과다 보관에 따른 인적·비용적 낭비요소 감축이라는 현실적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을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수행하는가에 따라 취득시한의 단축 문제에 대한 결론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 검토의 대상으로 살펴본 국가들 중에 일본의 제외한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건가액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종합적인 유실물정보검색시스템의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의 단축이라는 문제의 향후 전개 방향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財團法人 社會安全研究財團, 『遺失物取扱い業務海外調査研究』, 2005년.
- 遺失物法研究會, 實務遺失物事例にみる遺失物法の諸相(立花書房, 1998).
- 김상용, “동산물권(動産物權)의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한 한(韓) 독(獨) 비교(比較)”,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홍병식, “유실물을 찾읍시다”, 새가정, 통권 192호(1971.4), 새가정사.
- 諸哲雄, “3자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저스티스, 통권 제67호 2002.6, 한국법학원.
- 蔭山 信, 注解遺失物法 (東京法令出版, 2010).
- <http://www.npa.go.jp/safetylife/chiiki2/KaiseiIsitsubutsuhouTop.files/slide0001.htm>
- <http://www.lost112.go.kr>
- <http://www.bahn.de>
- <http://www.tierschutz-berlin.de/>
- http://www.met.police.uk/barnet/calling_in.htm.
- <http://www.dogshome.org/index.html>.
- <http://www.wmata.com/>
- http://www.police.pref.ehime.jp/kaikei/isitsubutsu/otoshimono/otoshimonoto_p.img/gaiyou.pdf#search='遺失物法'